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 기존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도록 함으로써,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등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(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